

합 천 군 공 보

공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992호

2021. 1. 05.

고 시

합천군고시 제2020-207호	고시문(합천 외토지구)	2
합천군고시 제2020-210호	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 고시문	3
합천군고시 제2021-1호	도로명주소고시문	8
합천군고시 제2021-2호	도로명주소변경 고시문	9

공 고

합천군공고 제2020-1462호	지적확정예정통지서공시송달 공고문	10
합천군공고 제2020-1470호	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12
합천군공고 제2020-1474호	공시송달공고문	17
합천군공고 제2020-1480호	공인등록폐기공고문	18

-7 -7							
히 라							
러 ㅁ							
I	I	I	I			[1

발 행 : 합천군 편집: 기획감사관(055-930-3161, 행정3161)

외토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시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합천군에서 시행할 「외토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2. 24.

합천군수

- 1. 사업의 목적 : 참수 농경지의 소규모 배수개선시업을 시행하여 인정적인 영농활동 및 농기소득 증대
-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

가. 사업의 내용 : 배수펌프장(Q=0.70㎡/sec) 1동 신설

나. 사업의 구역 :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

3. **사업비 필요금액** : 1,400백만원

4. 사업예정기간 : 2020.12. ~ 2021. 12.(1년)

- 5. 사업의 효과
 - 영농환경개선 및 농경지 침수방지로 농가소득 증대
 - 농경지 배수원활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토지 이용률 증대
- 6. 사업시행자 : 합천군수(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위탁)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: 붙임 참조
- 8. 관계도서의 비치

관계도서는 합천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(전화 055-930-3462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[붙 임]

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가. 토지조서

일련 번호	소재 (합천	•	지목	지적	편입 면적	소유자		
[번오	면/리	지번		(m²)	(m²)	주소	성명	
1	삼가면 외토리	1351-5	답	1,444	1,444	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183	김만성	
	합계			1,444	1,444			

합천군 고시 제2020-210호

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 고시

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「도로교통법」제12조 및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31일

합 천 군 수

1. 지정목적

-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려 어린이 교통사고 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
- 2.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 내용
 - ※ (붙임) 진도군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현황
- 3. 관련근거
 - 도로교통법 제12조(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
 -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

4. 위치도 및 구간 : (붙임) 합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지정 현황

연번	면번 구분 시설명		위 치	통`	합
<u> 11</u>	1 1	기 현 경	71 /1	변경전	변경후
1	통합	합천초등학교	경남 합천군 죽죽길 3	671m	통합
2	통합	합 성모유치원 경남 합천군 합천 충효로 3길 10		632m	(845m)
3	변경	남정초등학교	경남 합천군 남정길 28	723m	679m
4	변경	초계초등학교	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33-6	612m	510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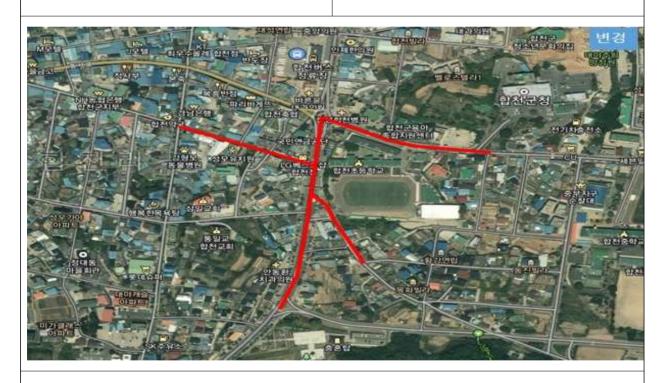
□ 어린이보호구역 지정(변경)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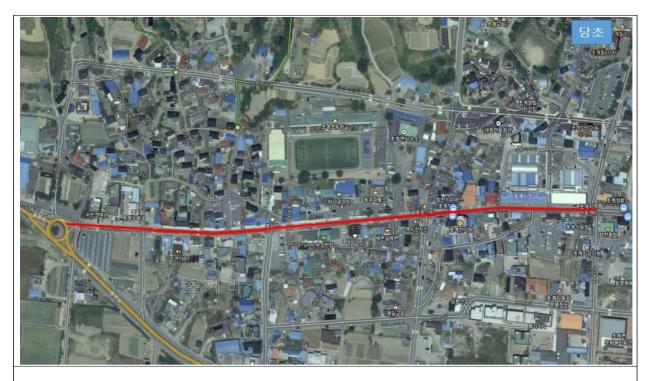


성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(변경 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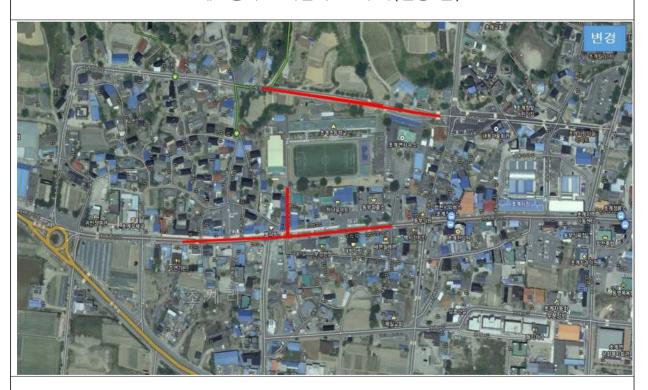
합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(변경 전)



합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[(통합), 변경 후]



초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(변경 전)



초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(변경 후)



남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(변경 전)



남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(변경 후)

합천군 고시 제2021 - 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(폐지 포함)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

2021. 01. 05.

합천군수

○ 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청정로 167-34 등 1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	시일	7	로로명	루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		별	지	참	조		
폐	지 도로명주소		폐지	일지	}	페 >	지사유
		별	지	참	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봉사과(☎930-3204)에 문의 또는 합천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01. 0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합천군 고시 제2021 - 2호

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5.

합천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핫들5로 7 등 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	1시일	7	로명	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		별	지	참	조		
闻	지 도로명주소		폐ス	시일지	}	폐	지사유
		별	지	참	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봉사과(☎930-3204)에 문의 또는 합천군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O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01. 0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종전 도로명주소는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공시 송달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호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주소불명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합니다.

2020년 12월 28일

합 천 군 수

- 다 음 -

- 1. 공고기간 : 2020. 12. 28. ~ 2020. 1. 18.(21일간)
- 2. 공고방법: 합천군청 홈페이지 및 합천군보
- 3. 공고대상 : 가호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(1명)
- 4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- 5. 기타사항
 - 가.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경우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(☎055-930-321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

			**1 1	70		J * *I *I						
접수번호						접수일시						
제출인	성 명 (기관·단체명)					생년월일 (등록번호)						
~~~~~~	주 :	소						전화번	호			
			종전 토지				확	정예정 트	토지		증감	
토지의 표 시	읍•면	동ㆍ리	지번	지목	면적 (m²)	읍•면	동ㆍ리	지번	지목	면적 (m²)	- 면적 비 (m²)	비고
<u>т</u>												
의견 내용												
「지조	석재조사0	세 관한 특	특별법」저	15조제3	항에 따	라 위와 i	같이 지적	확정예정	!통지에	대한 의견	년을 제출학	합니다.

년 월 일

**제출인** (서명 또는 인)

#### 합천군수 귀하

# 유 의 사 항 「지적재조사업무규정」제20조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경계(면적) 조정 → 임시경계점표지설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합천군공고 제2020 - 1470호

##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## 합 천 군 수

- 1. 자치법규명 :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
- 2. 개정이유

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 위·해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- 3. 주요내용
  - 조례제3조1항: 국제교류협의회 위원 인원구성 변경
  - 조례제3조4항 :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임기 신설
-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- 5. 입법예고기간 : 2020. 12. 30. ~ 2021. 1. 18.
- 6. 의견제출

가. 이 자치법규 일부개정 조례·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나 개인은 2021. 1. 18.까지 합천군수(참조 : 행정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 다. 의견 제출할 곳
  - (1) 주소 : 우)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행정과
  - (2) 전화: 055-930-3092/ FAX: 055-930-3098
  - (3) E-Mail: sgm2016@korea.kr.
- 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군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#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명	합천군	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	운영조례 일부	개정 조례안
의견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제출자	주 소			

## 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「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합 천 군 수 귀하

합천군조례 제 호

###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"이내"를 "내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40명 <u>이</u>	제3조(구성) ① <u>내외</u>
<u>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
	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
	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
	<u>한다.</u>
제13조 (생 략)	<u>제12조</u>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합천군 공고 제 2020-1474호

# 공시 송달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·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, 같은법제15조제3항 및 「지적재조사업무 규정」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# 합천군수

1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
2. 공고기간 : 2020. 12. 29. ~ 2021. 01. 15.(17일간)

3. 공고장소 :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기타사항

- 가.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☎(055-930-3217~8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공인 등록 • 폐기 공고

합천군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·폐기 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2. 31.

## 합 천 군 수

- 1. 등록 및 폐기사유
  - 합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.운영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
- 2. 등록(사용개시일) 및 폐기일 : 아래표 참조
- 3. 등록 및 폐기 인영

구분	공 인 명	ર્ગ લું	규 격 (서체)	등 록 (재등록/폐기) <b>사 유</b>	최 초 (사왕/폐기) 년월일	관리 부서
등록	합천군농공단지조 성사업특별회계분 임재무관의인	공사 사 분이 공사 사 분이 가 조 조 조 조 조 지 필요한 지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	가로2.0cm X 세로2.0cm (훈민정음 해례본체)	합천군농공단지조 성사업 특별회계 설치.운영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	2020.12.31	경제 교통과
등록	합천군농공단지조 성사업특별회계출 납원의인	합천군농공 단지조성사 업특별회미 중남원의인	가로1.8cm X 세로1.8cm (훈민정음 해례본체)	합천군농공단지조 성사업 특별회계 설치.운영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공인 등록	2020.12.31	경제 교통과

구분	공 인 명	ર્ગ લ્રું	규 격 (서체)	등 록 (재등록/폐기) <b>사 유</b>	최 초 (사왕/폐기) 년월일	관리 부서
폐기	합천군농공지구조 성사업특별회계자 금출납명령관		가로2.0cm X 세로2.0cm (한글전서체)	합천군농공단지조 성사업 특별회계 설치.운영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공인 폐기	2020.12.31	경제 교통과
폐기	합천군농공지구조 성사업특별회계자 금출납공무원		가로1.8cm X 세로1.8cm (한글전서체	합천군농공단지조 성사업 특별회계 설치.운영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공인 폐기	2020.12.31	경제 교통과